

Vol. 12

2024.12.13

Customs &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2017-2212

F. 02-545-5392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안만복본부장 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주경본부장 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장진명본부장 jmjang@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전지엽전임 jyjeon@hjcustoms.co.kr

CONTENTS

- I. 법령 개정사항
- II. 입안 예고
- III. 조세심판사례
-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I. 법령 개정사항

1.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해양수산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관세청장이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하는 품목 및 서류를 확대함. 또한 HS협약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 개정(HS2022)을 반영한 품목번호 정비 및 인증서류 발급근거 개정에 따른 인증서 서식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되는 신규 품목 및 서류의 확대	(인정품목) 품목 20 개 신규 지정 별표 1.2.3.5 개정			
	구분	품목		
	별표 1(농산물)	냉동애플망고, 신선새싹삼 등 2 개 품목		
	별표 2(수산물)	활넙치, 활전복, 김(건조) 등 16 개 품목		
	별표 3(축산물)	천연꿀 1 개 품목		
	별표 5(지역특산물)	냉동삼치 1 개 품목		
	(인정서류) 서류 2 종 신규 지정			
	구분	서류명	발급기관	서식
	수산물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K-FISH)사용승인서	사단법인 한국수산회	서식 20
	축산물	축산물(꿀)등급 판정확인서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식 21
HS 품목번호 및 용어 정비	(HS 품목분류 정비) 별표의 HS 번호를 HS 협약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 개정(HS2022)을 반영하여 정비			
	구분	해당연번		
	별표 1(농산물)	NO. 3.9.91.146.187.196.290.293.339 등 21 개		
	별표 2(수산물)	NO. 3.6.12.17.21.42.48.55.58.61.65.76 등 12 개		
	(용어 정비) 별표의 품목명, HS 번호 오류 등 정비			
	구분	해당연번		
	별표 1(농산물)	NO. 111.366.881 등 3 개		
	별표 2(수산물)	NO. 13.29.41.56.63.70.72 등 7 개		
	별표 3(축산물)	NO. 1.2.3.4.5 등 5 개		
	별표 4(식품류)	NO. 30 등 1 개		
	별표 5(지역특산물)	NO. 6.14.15.27.45 등 5 개		

(3) 시행일

2024.11.01

I. 법령 개정사항

2.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1) 개정 이유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부과대상 물품 및 유효기간	<p>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관세법 시행령」 제 98 조 1 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 3907.61.0000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수지로 한다.</p> <p>2024 년 7 월 30 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하며, 공포한 날부터 5 년간 효력을 가진다.</p>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p>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00%) 가. 하이난 이성(Hainan Yisheng Petrochemical Co.,Ltd.) 나. 이성 다후와(Yisheng Dahua Petrochemical Co.,Ltd.) 다. 하이난 이성 무역(Hainan Yisheng Trading Co.,Ltd.) 라. 하이난 형룽 무역(Hainan Hengrong Trading Co.,Ltd.)</p> <p>2.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98%) 가. 씨알씨(China Resources Chemical Innovative Materials Co.,Ltd.) 나. 주하이 씨알씨(Zhuhai China Resources Chemical Innovative Materials Co., Ltd.) 다. 씨알씨 뉴 머티리얼(China Resources Chemicals New Materials Co., Ltd.)</p> <p>3. 그 밖의 공급자 (7.98%) 3호 공급자가 1호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제23조 1항에 따라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3호 공급자에 대한 덤핑 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1호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함.</p>

(3) 시행일

2024.11.30

II. 입안예고

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입안 이유

「관세법」 제 95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바, 중소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 분의 50, 100 분의 30 으로 하고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2026 년 12 월 31 일까지 2 년 연장하는 한편, 종전에 관세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46 개 물품 중 고속 연사기 등 8 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사기 등 4 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2 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여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중소제조업체 감면율	70%	50%
중견제조업체 감면율	50%	30%
대상물품(별표 2 의 4)	46 개	42 개
적용기한	2026 년 12 월 31 일	

(3) 의견제출기한 및 시행일

의견제출기한: 2024.12.23 까지

시행일: 2025.01.01

II. 입안예고

2.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입안 이유

기획재정부장관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품목을 세분하여 정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바, 통관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품목번호 및 품명	별표 1의 가(제 2 조)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대상 물품
	별표 1의 나(제 2.6.7 조)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대상 물품
	별표 3의 가(제 4 조) -일반양허관세 대상 물품
	별표 3의 다(제 4 조) -방글라데시에 대한 양허관세 대상 물품
	별표 3의 라(제 4 조) -라오스에 대한 양허관세 대상 물품

(3) 의견제출기한 및 시행일

의견제출기한: 2024.12.16 까지

시행일: 2025.01.01

II. 입안예고

3.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입안 이유

기획재정부장관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품목을 세분하여 정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바, 통관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협력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품목번호 및 품명	별표 -국제협력관세의 적용대상 물품

(3) 의견제출기한 및 시행일

의견제출기한: 2024.12.16 까지

시행일: 2025.01.01

II. 입안예고

4.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입안 이유

기획재정부장관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품목을 세분하여 정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바, 통관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품목번호 및 품명	별표 2(제 3 조) -특혜관세 대상 물품

(3) 의견제출기한 및 시행일

의견제출기한: 2024.12.16 까지

시행일: 2025.01.01

II. 입안예고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입안 이유

기획재정부장관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품목을 세분하여 정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바, 통관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협정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품목번호 및 품명	별표 1 (제 2 조 1 항)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별표 2 (제 2 조 2 항)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별표 3 (제 2 조 3 항)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별표 4 (제 2 조 4 항)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별표 5 (제 2 조 4 항 단서)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수입물품
	별표 6 (제 2 조 6 항)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별표 7 (제 2 조 7 항)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별표 8 (제 2 조 8 항)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별표 10 (제 2 조 9 항)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별표 11 (제 2 조 10 항)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II. 입안예고

구분	내용
품목번호 및 품명	별표 12 (제 2 조 11 항)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별표 13 (제 2 조 12 항)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별표 14 (제 2 조 13 항)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별표 15 (제 2 조 14 항)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별표 16 (제 2 조 15 항 단서)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별표 17 (제 2 조 16 항)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별표 17 의 2 (제 2 조 17 항)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별표 17 의 3 (제 2 조 18 항)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별표 17 의 4 (제 2 조 19 항)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별표 17 의 5 (제 2 조 20 항)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별표 17 의 6 (제 2 조 21 항)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별표 17 의 7 (제 2 조 22 항)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별표 20 (제 30 조 1 항 3 호)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대상 수입물품

(3) 의견제출기한 및 시행일

의견제출기한: 2024.12.16 까지

시행일: 2025.01.01

II. 입안예고

6.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입안 이유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23.09.07)에 따라 협정 대상국가인 필리핀을 기존 관련 조문에 추가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 24 조 1 항 22 호	- '필리핀'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 대상국가에 포함
제 24 조 12 항	- 한-필리핀 FTA 에 따라 잠정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에 대해, 그 신청 내용을 입수할 수 있는 방법과 신청에 대한 의견 개진 기간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하는 대상국가에 '필리핀'을 추가
제 24 조 16 항 15 호	- '필리핀'을 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 조치완화 규정 대상국가에 포함 - 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 조치기간이 1 년 이상이면 일정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
제 24 조의 2 1 항~3 항	- 다자 세이프가드조치시 필리핀산에 대해 재량적 적용 배제가 가능하며, 특히 그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 더욱 협력적인 관계하에서 의무적으로 배제

II. 입안예고

7.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입안 이유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 호,24.4.25.)에 따라 유사 분야 7 개 고시 및 훈령을 통.폐합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통.폐합 대상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 -「세관수수료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관세 등 제세의 징수결정(4~6 조)	-관세 등의 징수결정 사유 -관세 등의 징수결정 방법 등
납부의 고지(7~9 조)	-관세 등의 납부고지 방법 -납부기한의 연장 승인 방법 등
수납확인 및 대조 확인(10~19 조)	-수납 확인 방법 및 세금계산서 출력 -한국은행 수입금 영수내용과 대조 확인 및 월계 대조 -현금 및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납 방법 등
월별납부(20~34 조)	-월별납부 요건 및 신청 승인 취소 등 -월별납부 한도액 조정, 한도액 사용과 전산관리 등 -월별납부 방법 및 작성시기 등
담보관리(35~51 조)	-담보제공 대상, 담보의 종류 및 담보제공 범위 -담보제공 생략대상 및 생략대상 해당여부 확인신청 등 -포괄담보의 제공 및 사용승인 등 -담보의 추가,변경,해제 등
정보 보관금의 출납(52~61 조)	-취급은행의 지정, 정부보관금의 수납 및 불출 방법 등 -정부 보관금의 국고귀속 및 수납확인 등

II. 입안예고

체납관리(62~64 조)	-독촉, 체납자 관리 등
환급금 처리(65~72 조)	-환급의 신청, 결정, 제세 총당 등 -금융기관의 계좌 이체입금, 지급미필 환급금의 처리 방법 등

II. 입안예고

8.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입안 이유

WCO HS 위원회에서 승인한 HS 해설서(제 69 차~제 73 차)와 "HS 품목분류의견서(제 73 차)"개정 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HS 해설서 일부 개정 (WCO 제 69 차~제 73 차 HS 위원회 결정)	-제 2404 호의 범위 명확화 -제 29 류의 마약과 향정신성 일람표에 신규물질 추가 -제 44 류의 부속서 특정 열대산 목재의 명칭 개정 등
HS 품목분류의견서 (WCO 제 73 차 HS 위원회 결정)	-꼬투리를 제거한 냉동 풋대두(제 1201.90 호) -코코피트 벽돌(제 1404.90 호) -과일주스 21%를 함유한 무탄산 음료(제 2201.10 호) -과일맥주(제 2203.00 호) -안면 물티슈(제 3307.90 호) 등 총 27 개 품목

(3) 의견제출기한

2024.12.16 까지

II. 입안예고

9.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입안 이유

관세법 개정으로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을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으로 반영하고, 세관신고 여부에 따라 달리 정한 권리자의 통관보류 요청 기한을 통합함. 또한 객관성 강화를 위한 결정심의회 구성 인원의 확대 등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에 추가 (제 2 조)	-관세법 개정에 따른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이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수출입자 등의 의미확대 및 주요 용어 정의에 추가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후 변동신고 대상 명시 (제 10 조)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후 변동사항 발생시 그 변동일로부터 30 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대상을 명시
수출입신고 등 사실 통보 대상자 추가 (제 13 조)	-수출입자 등과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반입자 또는 수출입신고등을 대행한 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 추가
지식재산권 세관신고와 상관없이 통관보류 요청 기한 통합 (제 14 조)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통관보류 요청기한을 세관신고와 상관없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로 통합
지식재산권 침해 등 결정심의회 구성 인원 확대 (제 24 조)	-특허권 등 난이도 있는 지재권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객관성 강화를 위해 심의회 구성 인원을 '5 명 이상 7 명 이내'로 확대

(3) 의견제출기한

2024.12.18 까지

II. 입안예고

1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입안 이유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23 년 9 월 7 일에 정식 서명됨에 따라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 긴급관세조치의 절차와 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원활한 협정 이행을 위해 협정의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 2 조 23 항 및 별표 17 의 8	(협정관세율)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규정
제 13 조 1 항 16 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기간) 필리핀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 조사 요청 접수일부터 3 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제 21 조 24 항, 제 23 조 1 항 19 호, 제 23 조 2 항 21 호, 제 23 조 3 항 21 호, 제 24 조 1 항 16 호, 제 30 조 1 항 9 호, 제 32 조 14 항, 별표 24 의 3, 제 22 조 1 항, 제 25 조 2 항, 제 27 조, 제 29 조 1 항	(긴급관세의 절차 등) 1) 긴급관세조치를 위한 조사 개시 사실을 필리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필리핀과 협의하도록 함 2)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2 년(연장기간 포함시 3 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1 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 점진적 완화 조치를 취하도록 함. 4) 긴급관세조치를 위한 조사 개시 후 45 일이 경과한 후에만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취하도록 함 5) 필리핀산 바나나에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제 33 조 2 항 4 호, 제 33 조 1.6.7.11 항	(덤핑방지관세 부과 절차) 1)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조사 개시 15 일 전까지 필리핀에 통보하도록 함

<p>제 33 조 2 항 4 호, 제 33 조 1.6.7.11 항</p>	<p>2)가격수정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필리핀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후 1 년 이내에는 동일 물품에 대하여 다시 조사할 수 없도록 함</p>
<p>제 34 조 2.7.8 항</p>	<p>(상계관세의 부과절차) 1)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 개시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필리핀에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함 2)가격수정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수출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하고 협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p>

II. 입안예고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23 년 9 월 7 일에 정식 서명됨에 따라, 협정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본.호주.뉴질랜드와 2025 년 1 월 1 일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 증명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 또한 2025 년 1 월 1 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별표 15 의 7」 및 「별표 22」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필리핀의 영역 (제 2 조 1 호 '머'목)	-필리핀의 영역을 필리핀 헌법 제 1 조에 정의된 국가 영역과 필리핀이 자국의 법과 규정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으로 규정
원산지결정기준 (제 4 조 23 호, 별표 15 의 9)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에 적용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규정함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제 7 조 1 항 13 호, 2 항 17 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을 기관발급 방식과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발급 방식으로 규정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제 8 조 13 항)	-필리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세관으로 규정
원산지증명서 대체발급 (제 10 조 12 항)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새로운 원산지증명서로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제 15 조 22 항, 별표 20 의 5, 별지 24 호의 11.12 서식)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 방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상업송장에 기재해야 하는 문구와 작성 방법을 규정
원산지 조사 방법 (제 24 조 22 호)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와 관련하여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서면조사하거나, 필리핀의 관세 당국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생산자 또는 수출자를 직접 현지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

II. 입안예고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 통지 기간 (제 25 조 1 항)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현지 방문일부터 6 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제 30 조 1 항, 제 30 조 3 항 12 호)	-수입 후 1 년 이내에 재수출하는 직업용구, 전시물품, 운동용품, 상용건품 및 시연용 영상매체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면제되는 세액의 110%까지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
관세 당국의 원산지 조사결과 회신 (제 37 조 1 항 18 호)	-필리핀 관세 당국이 원산지 확인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 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일본.호주.뉴질랜드와 수출자, 생산자 원산지 자율 증명 제도 도입 (제 7 조 2 항 15 호, 15 조 19 항 2 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일본.호주.뉴질랜드와의 수출입거래에서 수출자.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른 별표 정비」 (별표 15 의 7, 별표 22)	-202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별표 15 의 7 및 별표 22 의 품목번호.품명을 정비

(3) 의견제출기한

2024.12.23까지

II. 입안예고

1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2) 주요내용

한-필리핀 FTA 시행을 위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고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제 28 조)	(소급발급 문구 기재) -선적 후 발급의 예외규정에 필리핀과의 협정 반영 EX 선적일부터 3 근무일(선적일을 포함)아내에 발급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제 34 조)	(진정등본 보증문구 기재) -필리핀과의 협정을 반영하여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절차 규정 EX 규칙 별지 제 24 호 11 서식의 12 란에 날인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제 35 조)	(정정발급 절차 규정) -원산지증명서 정정 방법에 필리핀과의 협정 반영 및 협정명을 협정발표 순서로 재정렬 EX 잘못된 부분에 선을 긋고 정정하거나 신규 원산지증명서로 대체 발급

(3) 의견제출기한

2024.12.16까지

Ⅲ. 조세심판사례

1.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담배제조를 위탁한 국내권리자가 해외권리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주요내용

가. 네덜란드 소재 A 는 2013.4.1 B 와 Trademark and Technology Access Sub-License Agreement(이하 "쟁점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내에서 담배 제품의 제조, 생산, 수입, 판매, 마케팅, 유통과 관련하여 상표 및 기술 등에 대한 권리사용을 허여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C 그룹 계열사로서 2011.1.3. A 의 한국 영업소인 D 와 Contract Manufacturing Agreement(이하 "쟁점제조위탁계약")을 체결하고, D 가 위탁제조를 의뢰한 담배(이하 "쟁점담배")를 제조하여 D 에 전량 공급한다.

다. D 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쟁점담배를 D(이하 "D")에 위탁판매한 후, D 의 순매출액의 10%(상표사용료, 혁신 및 기술사용료 각각 5%)(이하 "쟁점로열티")를 B 에게 지급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담배의 제조를 위하여 2019.1.28.부터 2019.6.18.까지 수입신고 444 건으로 영국 소재 F(이하 "F") 등 관계사로부터는 담뱃잎(이하 "쟁점담뱃잎")을, G(이하 "G")가 증개한 관계사 및 국내외 제 3 자로부터 포장재 등(이하 "쟁점포장재"라 하고, 쟁점담뱃잎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에 쟁점로열티를 가산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3.12.27. 처분청에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총합계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2.23. 및 2024.2.26.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13.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결정요지

쟁점금액에는 담배제조와 관련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에는 그룹이 자사 브랜드 담배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하우가 체화되어 있어 쟁점금액과 쟁점물품은 서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임.

(3) 결정일

2024.10.02 (조심 2024 관 0076)

Ⅲ. 조세심판사례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처분청의 원산지조사결과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한-페루 FTA 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2021.9.2. 페루 소재 A(이하 "쟁점수출자")로부터 GREEN MUNG BEAN(건조 녹두, 이하 "쟁점물품") 48 톤을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 17 조에 따라 쟁점물품이 한-페루 FTA 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 및 페루 당국이 제출한 자료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24.3.22. 청구법인에게 관세 및 가산세를 경정. 고지(이하 "쟁점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정요지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상 생산자로 기재된 자는 페루 당국의 원산지 검증정보에서 가공업자로 나타나고, 쟁점물품의 구체적인 생산자나 경작농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생산 관련 입증자료가 없어 쟁점물품을 페루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3) 결정일

2024.10.07 (조심 2024 관 0074)

Ⅲ. 조세심판사례

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완제품과 관련한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로 상표권자 등에게 지급하는 쟁점금액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주요내용

- 가. 청구법인은 미국 소재 A(이하 "A", 그 계열회사들을 통틀어 "A 계열사")의 자회사인 스위스 소재 B(이하 "B")이 100% 투자한 법인으로, 담배 제조·수출 및 판매업, 제조 담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01.5.31.부터 2011.8.1.까지 C(이하 "C"라 한다), D(이하 "D"라 한다), E(이하 "E"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쟁점라이센서"라 한다)와 국내에서 O 완제품 담배를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과 지적재산권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 및 수정계약(이하 "쟁점라이선스계약") 등을 체결하고, 쟁점라이센서에게 국내에서 판매된 완제품 담배 순매출액의 일정비율(담배의 브랜드에 따라 다르다)을 권리사용료(이하 "쟁점로열티")로 지급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2019.1.1.부터 2024.1.6.까지 A 계열사 등으로부터 담배 완제품의 원재료인 각초, 각초의 원재료인 숙성되거나 가공된 담뱃잎 및 각초와 결합되는 필터·권련지 등 부재료(이하 "쟁점물품")를 수입신고 4851 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로열티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한 후, 쟁점라이센서에게 지급하는 쟁점로열티가 확정되면 이를 가산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23.11.29.부터 2024.1.26.까지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는다면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총합계 금액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6. 및 2024.1.29.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4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결정요지

쟁점금액의 지급대상인 권리는 브랜드 담배 완제품의 제조·판매에 필요한 상표권자 등의 상표, 특허, 노하우, 영업비밀 등 일체의 무형재산권으로서 상표부착 물품을 포함한 수입물품이 서로 결합하여 담배 완제품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과 쟁점물품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3) 결정일

2024.10.08 (조심 2024 관 0066)

Ⅲ. 조세심판사례

4.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한-EU FTA 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 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 이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2017.8.25.부터 2022.2.25.까지 네덜란드 소재 A 로부터 유기농 산양 전지분유 257.95 톤(이하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 반입하였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Tariff Rate Quota, 이하 "TRQ")의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한-EU FTA 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이하 "쟁점고시")을 고시하였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는 쟁점고시 제 3 조 및 별표 1 에 따라 전지분유에 대한 TRQ 를 수입권공매방식으로 배정하고 있는 추천대행기관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고시에 따라 유통공사로부터 전지분유에 대한 TRQ 를 배정받은 (주)B, (주)C 및 (주)D 등(이하 "피추천업체" 또는 "대행업체")에게 쟁점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이하 "B/L 양도")하였고, 피추천업체는 B/L 양도받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 16 건으로 한-EU FTA 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며,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은 후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재양도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2 년 3 월경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피추천업체 명의로 발급된 '한-EU FTA TRQ 적용 추천서'를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B/L 을 피추천업체에게 양수도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정정하고, 그 세율은 WTO 양허세율(미추천) 176%를 적용하여, 2022.8.22., 2023.1.27. 및 2023.2.8. 청구법인에게 관세 및 가산세 합계금액을 각각 경정. 고지(이하 "쟁점처분")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8, 2023.2.6 및 2023.2.16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 전반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나,
대행업체는 수수료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을 뿐 쟁점물품
수입에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협정세율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3) 결정일

2024.10.28 (조심 2023 관 0003)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내년부터 수출입 통관시 신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적용

- 공급망 안정화 뒷받침, 국민보건 증진, 기업부담 완화 등 목적
- 현재 적용중인 「2022 HSK」 일부 수정

수출입 통관시 기업이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상품분류 코드를 규정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HSK)*가 일부 개정되어 내년 2025년부터 적용된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HSK)*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하는 6 단위의 상품분류 코드인 HS 협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이를 세분화하여 총 10 단위로 운용하는 것으로, 수출입 통관시 물품에 대한 각종 요건사항 확인, FTA 원산지 결정, 중소기업의 간이징액환급 등의 기준이 됨.

*현행 HSK는 2022년에 개편된 'WCO 제 7차 HS 협약'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차기 개편인 'WCO 제 8차 협약'은 28.1.1 시행될 예정임.

이번 HSK를 개정하는 취지는 정부의 산업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뒷받침하고, 위해 가능성 있는 수입 물품이나 먹거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HSK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교정하여 기업의 신고 오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고 산업경쟁력을 뒷받침 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핵심산업인 이차전지·전기차 관련 소재·부품, 그리고 신성장 에너지 분야의 수소연료나 수전해 설비 등에 대한 코드가 신설된다.

둘째, 먹거리 안전 및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착화제가 포함된 구이용 숯, 납 검출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 국내산 민어로 둔갑되어 유통될 수 있는 남방 먹조기와 점성어 등에 대한 코드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해 오존층 파괴 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와 포레이트(ISO) 같은 독성 살충제를 세분하여 관리한다.

셋째, 수출입 신고 오류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고 무역통계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품목분류 유권해석과 HSK 체계가 부합되도록 오류를 교정한다. 초음파 어군탐지기, 집성판, 정형외과용 스크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HSK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삭제되거나 수정되기 전 HSK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통관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2.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알루미늄 압출재 산업피해 부정 판정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30(현지시간) 한국산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산업피해 관련, 미국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부정 판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미국 압출연합 및 철강노조는 지난 '23.10월 한국산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해 반덤핑 제소

*한국, 중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대만, 태국, 터키, UAE, 베트남

미 절차상, 반덤핑 조사는 미 상무부의 덤핑율 조사와 ITC의 산업피해 조사로 구성되며, ITC가 산업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할 경우 모든 조사가 종결된다.

이에 따라, 지난 9.27일 미 상무부가 우리 업계에 부과한 0~43.56%의 반덤핑율은 종료되며, 알루미늄압출재 업계 및 이를 사용한 자동차 부품 업계의 비용증가 가능성이 없어져서 수출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 상무부는 한국기업에 대해 알멕 0%, 신양 및 여타 기업 3.13%, 미응답 7개사에 43.56% 덤핑율 부과 ('22년 대미 수출현황 : 9,839천톤/ 68백만 불, 상무부 자료 기준)

금번 미 ITC의 산업피해 부정 판정은 9.27일 미 상무부의 반덤핑 부과 판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사가 종결되는 이례적인 판정인 바,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동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수차례의 업계 간담회 및 대책회의('24.4.29)를 가졌고,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사업을 통해 법률·회계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상무 장관 앞 서한('24.3.5), 상무부 고위급 양자 접촉('24.3.13, 4.17, 9.10)등을 통해 미측에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하여 우리 업계가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수출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3. 관세청-특허청, 위조 상품 단속 협력 업무협약(MOU)체결

- 소비자와 우리기업 보호를 위해 위조 상품 단속 협력을 강화하기로

관세청(청장 고광호)과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1월 15일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위조 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를 악용한 위조 상품의 국내 불법 반입과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약 체결 이전인 올해 4월부터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특허청이 해외 직구 모니터링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이를 통관 단계에서 물품 검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4년 10월까지 5,000건이 넘는 위조상품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성과'를 내었다.

*(’24.10월 누적 기준) 2,626건 정보제공, 5,116건 적발 (통관보류)

관세청과 특허청은 협업 성과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위조 상품으로부터 소비자와 우리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기관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다 활발히 교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상호 공감하고 이번 업무협약 체결하게 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존의 단속 프로그램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위조 상품 우범 동향이나 케이(K)-브랜드 보호를 위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위조 상품 판매·구매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펼치기로 했다.

고광호 관세청장은 "현재 시행 중인 단속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부처 간 협업사례"라며, "앞으로도 특허청과 협력을 돈독히 하여 위조 상품으로부터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4. 관세청, 현장 중심의 제도 혁신으로 긴급수입 원부자재 신속 통관 지원한다

- 관세청, '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 개선
- 반도체 등 긴급수입 원부자재 신속 통관 가능해져, 시간.비용 절감 기대

관세청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하고 수출입 기업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자 '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를 개선하여 11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통관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신속하게 수입통관을 완료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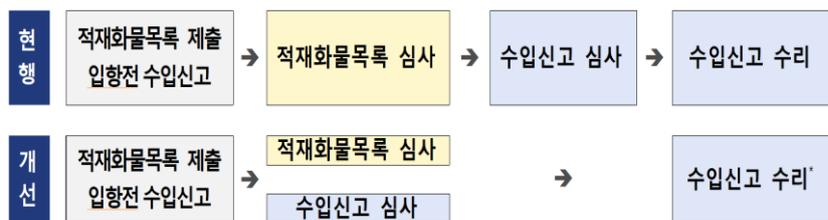
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는 긴급을 요하는 수입 화물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기존 통관 프로세스에서는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마쳐야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하여 제도 도입 취지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세관에서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업무시간 이후 마친 경우에는 화주가 임시개청을 신청하여 야간에 통관을 진행하거나 다음날(금요일인 경우 월요일)로 통관을 미뤄야 했다.

이에 수출입 현장에서는 통관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관세청은 내·외부 의견수렴, 관련 규정 검토, 시스템 개선에 따른 영향도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적재화물목록 심사 완료 이전에도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하도록 통관 시스템을 개편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출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통관 과정에서의 숨겨진 규제들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 개선 전·후 비교 >



* 단, 적재화물목록 심사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를 보류하고 추가 검사 후 최종 판단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5. 내년부터 일본 수출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

- 일본·호주·뉴질랜드와 수출자·생산자 원산지 자율 증명 이행에 합의

2025년 1월 1일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상의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아세안(ASEAN) 10개국 및 비(非)아세안(ASEAN) 5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2.2.1 발효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지 않은 일본의 경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83%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

현재까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와 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 능력을 갖춘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제도」가 시행 중인데, 이에 더하여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도록 하는 「자율증명 제도」*가 이번 합의를 통하여 추가되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간에는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제도가 이미 이행 중이며, 한국은 내년부터 이들 3개국과 신규 이행에 합의

이에 따라 종래 일본에 수출하면서 대한상이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 받아왔던 국내 기업*이 자율증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RCEP)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 방식 >

- (현행) 기관증명,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 (2025년~)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 추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현황>

(단위: 건, 천 불)

對 수출	'22년		'23년		'24년(1~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본	35,305	2,228,918	41,236	2,289,182	30,121	1,584,896
호주	49	2,708	119	22,708	138	23,668
뉴질랜드	3	54	11	151	10	179

※ 호주, 뉴질랜드와는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어 있으며, 각 양자 협정에서 자율 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기관발급 건수가 적은 것으로 추정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6.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타결

-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신흥 물류 요충지인 조지아와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 주력 수출품은 승용차, K-푸드(가공식품, 주류 등) 관세 즉시 철폐
- 음반 등 시청각, 출판, 교육 서비스 개방 등 K-컬처 확산 기대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캐나다 아르벨랏제 조지아 경제지속가능발전부 차관은 11.27일 서울에서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이하 EPA) 협상 타결을 선언하였다. 금번에 타결된 한-조지아 EPA는 국회에 보고된 EPA 추진 대상 국가 중 첫 번째로 타결된 협정이자 우리나라가 체결한 26번째(협상타결 기준) 자유무역협정으로 주요 타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을 계기로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TA와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

(상품) 한-조지아 EPA를 통해 상품은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는 93.3%, 조지아는 91.6%에 적용되는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시장개방 수준 :** (품목수 기준) 한 93.3%, 조지아 91.6%
(수입액 기준) 한 100%, 조지아 99.8%

주력 수출 품목인 승용차 관련,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및 친환경차에 대한 조지아의 관세가 전면 즉시 철폐된다. 이에, 우리나라 승용차가 일본 등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며, 조지아 내 수입비중이 높은 중고차 분야에서도 우리 제품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또한, K-콘텐츠 열풍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K-푸드와 K-뷰티에 대한 관세도 즉시 철폐되어 우리 식품과 화장품 교역의 지평이 코카서스 지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품, 가전제품, 기계 등 우리 수출유망 품목에 대한 조지아측 관세 또한 철폐된다.

한편, 조지아의 주요 생산품인 와인뿐만 아니라, 증류주(차차), 천연 탄산수 등에 대해서 우리도 수입 관세를 즉시 철폐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의 선택의 폭과 효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공산품의 경우, 구리 스크랩, 슬랙 등 국내에서 원료로 활용이 가능한 금속, 비금속의 수입 관세도 철폐되어 관련 업계의 원료 수급 및 생산안정 또한 기대된다. 그러나, 쌀, 천연꿀 등 우리측 민감품목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서비스) 조지아의 해운, 도로 화물 운송, 창고업, 화물 주선업 등이 폭넓게 개방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운송·물류 네트워크 다각화 및 수출 원활화는 물론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대비한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음반 등 시청각, 출판, 전시업, 교육 서비스 등도 개방되어 조지아 내 한류 접근성 향상*을 통한 한류 확산이 기대된다.

(원산지)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주요 공산품을 비롯해 우리 측 경쟁력이 높은 주요 수출품은 역외산 재료나 부품을 활용해 제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다만, 육류나 낙농품 등 동물성 생산품과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국내 업계의 우려 등을 반영하여, 역내산 재료를 사용할 때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다. 치즈, 홍삼 등 가공 농축산식품의 경우에도 핵심 원재료는 국산을 사용하도록 하여 국내 생산 기반과 연계를 강화하였다

(정부조달) 조지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총 4,800여개 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 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WTO) 정부조달협정(GPA)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조지아와 GPA 수준의 조달규범*에 합의함으로써 조지아 조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식재산권) 저작권·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반을 보호하는 실질적 규범에 합의하고, 온라인상 지재권 침해에 관한 효과적인 구제장치 또한 마련했다. 이를 통해, K-콘텐츠의 안정적인 확산 기반이 조성되고, 우리 기업의 상표·디자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무역) 우리 K-콘텐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금지 영구화 및 우리 디지털제품을 자국 디지털제품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약속 조항도 마련했다. 또한 조지아가 체결한 FTA로는 최초로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의무 등이 금번 협정에 포함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조지아 내에 서버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 없이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